



2021년 8월 3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월 31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30.(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심진수 과장(044-203-4360)	담당자	이효은 사무관(044-203-4362)

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

-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
-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,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‘21.6.15 공포, 9.16일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,
 -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,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
- 산업부는 “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,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힘

